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75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민병덕·한창민·위성곤

김한규 · 김남희 · 이수진

김성환 · 김남근 · 김종민

김용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

(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 였음.

또 기존 노역장유치 기간은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 와 연동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가.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5조).
- 나. 노역장유치에서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함(안 제70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5조(벌금) ① 벌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수(日數)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할 때에는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 ②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은 1천만 원 이하로 한다.
 - ③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정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 정액은 판결서에 기재한다.

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② 벌금형의 유치기간은 벌금형의 일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5條(罰金) 罰金은 5萬원 以上	제45조(벌금) ① 벌금은 다른 법
으로 한다. 다만, 減輕하는 경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
우에는 5萬원 미만으로 할 수	수(日數)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할 때에는 총액으
	로 산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②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정액
	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
	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
	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야
	<u>한다.</u>
	④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정액
	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第70條(노역장 유치) ① (생 략)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의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한다.

한다.

⑤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 정액은 판결서에 기재한다.

<u>제70조(노역장 유치)</u> ① (현행과 같음)

② 벌금형의 유치기간은 벌금 형의 일수에 따른다.